201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신규선정 운영지침

(KOTRA, 간사기관용)

2015. 8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Ⅰ.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개요 ····· 1

1. 사업 개요 ····· 2

2.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지원내용(2015년 기준) ····· 6

Ⅱ. 201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 8

1. 신규선정 공고(산업부 제2015-433호, 2015.8.6) ····· 9

2.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기준 변경 ····· 22

3. 2015년 세계일류상품 신규선정 및 자격심사 계획 ····· 28

Ⅲ. 신규선정 단계별 세부운영지침 ····· 34

1. 신청 및 접수 ····· 35

2. 추천위원회 ····· 38

[붙임1] 추천위원회 관련 양식 ····· 41

[붙임2]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 48

[붙임3]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리스트(2001년~2014년) ····· 72

Ⅰ.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개요

1. 사업개요
2.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지원내용(2015년 기준)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급화 및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추진

○ 시장점유율 5위 이내 품목(5년 이내 진입가능품목 포함) 및 생산기업을 선정, 기술·자금지원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종합지원

□ 사업 연혁

○ 2001년 '세계일류상품육성 촉진대회' 개최하여 사업 출범
- 기업 선정은 산업부, 해외마케팅 지원은 KOTRA가 담당
- 120개 품목, 140개 생산기업 최초 선정

○ 2013년 선정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 통합운영기관으로 KOTRA 지정
* ('01-'04)산업자원부 직접 운영, ('05-'08)한국산업기술재단, ('09-'12)한국생산성본부가 담당

□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

○ 점유율 규모에 따라 현재일류(점유율 5위 이내)/차세대(5년 이내 진입가능), 인증대상에 따라 품목/생산기업으로 나누어 선정

○ 업종별 추천위 및 일류상품발전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확정
* 산업부 차관(위원장),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 언론계 등 20명

기업, 단체	→ (신청)	업종별 간사기관(29개)	→ (상정)	업종별 추천위	→ (추천)	일류상품 발전심의위*

○ '01~'14년까지 20차례 신규선정과 12차례 자격심사를 거쳐 **총 660개 품목, 750개 기업** 자격 유지

구 분		품 목			인증기업		
		현재	차세대	(계)	현재	차세대	(계)
선정(20회)		528	659	1,187	653	694	1,347
자격심사 (총12회)	승 격	267	△267	-	280	△280	-
	탈 락	△319	△208	△527	△373	△224	△597
(계)		476	184	660	560	190	750

* 신규선정은 '02-'07년까지 매년 2회, '08년부터 1회 선정, 자격심사는 '03년부터 매년 1회

○ 세계일류상품 기업 수출현황(순기업 476개사, 2014년 수출액 기준)

(개사, 백만달러)

업종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합계	
	기업수	수출액	기업수	수출액	기업수	수출액
건축자재	0	0	3	21	3	21
디스플레이	3	49,888	16	737	19	50,625
반도체	2	66,614	16	447	18	67,062
산업기계플랜트	4	16,352	58	3,213	62	19,565
생활용품	3	295	27	356	30	652
서비스	0	0	21	181	21	181
섬유/석유화학	15	23,096	35	3,294	50	26,391
수송기계	7	6,047	34	2,826	41	8,874
식료품	1	84,620	22	690	23	774
의료기기/용품	0	0	66	689	66	689
자동차/부품	1	21,487	8	761	9	22,249
전자/IT부품	5	5,414	83	2,533	88	7,948
정밀화학/의약품	1	254	14	253	15	507
철강/화학금속	5	3,611	10	846	15	4,457
통신부품/장비	0	0	12	137	12	137
화장품	0	0	4	63	4	63
합계	47	193,147	429	17,049	476	210,196

□ 선정-지원-사후관리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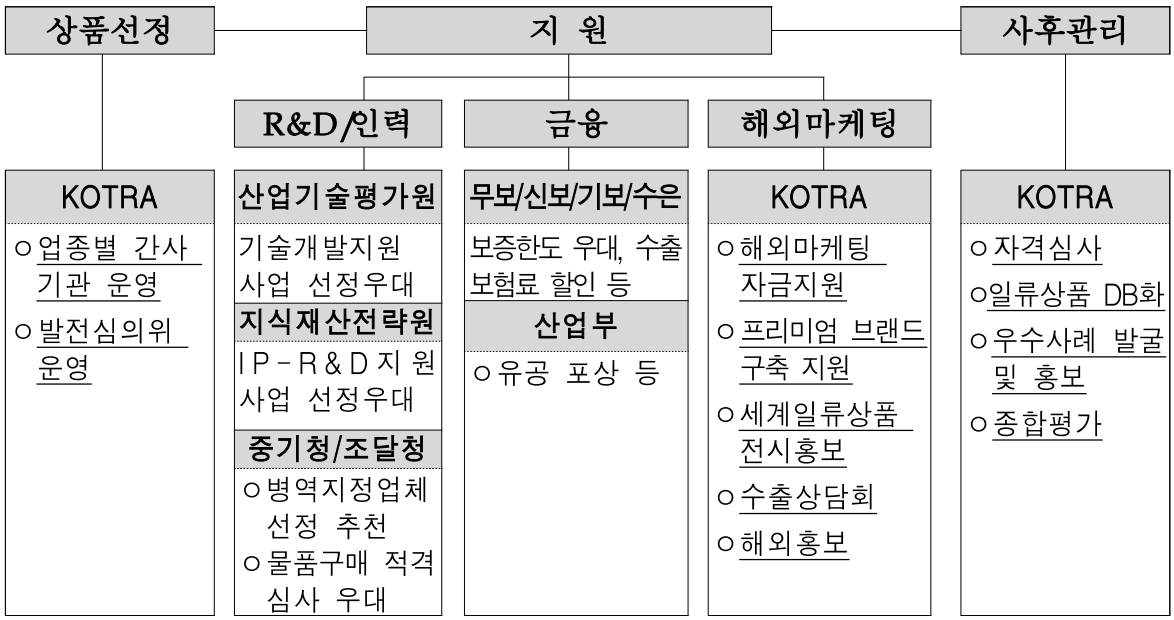

* 밑줄친 사업은 KOTRA 직접 지원, 나머지 사업은 타 정책지원과 연계한 간접 지원

□ 2014년 지원사업 성과 및 평가

< 2014년 사업실적 요약 >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실적
제도 운영	신규선정 및 자격유지 심사	▪ **(신규) 58개 품목 67개 기업 선정** - (현재) 33品 41社, (차세대) 25品 26社 - 인증서 수여식(12.8) 개최 및 홍보 ▪ **(자격심사) 37品 44社 자격제외, 10品 10社 승격** ▪ 660개 품목, 750개 기업 운영 중('15.6월 기준)
기업 맞춤형 지원	자가브랜드 수출지원사업	▪ **16개(1년차 7, 2년차 5, 3년차 4) 기업 지원** ▪ 지원기업 전체 수출액 1,411→1,654백만달러, 목표시장 수출액 25.8→56.2백만달러로 증가 ▪ **워크샵 정례화로 미진했던 고객만족도 대폭 개선**
	차세대 해외마케팅 지원	▪ **총 91개사 11.7억원 지원** - 개별전시회 77건, 단체전시회 53건, 지사화/물류 47건, 해외시장조사 10건, 기타 1건 ▪ 계약액 40.6백만달러
	수요맞춤형 공모사업	▪ **총 37개사 6.5억원 지원** - CSR, 해외 단독행사, 인증취득, 전시회 참가 등 ▪ 계약추진액 약 1.6억 달러
홍보 마케팅	세계일류상품전	▪ **9월 25-27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 - 국내기업 60개사 참가, 8,500명 참관 - 바이어 489개사 참가, 상담 1,069건 상담액 8천만달러 ▪ '대상', 동반성장관 통해 협력업체 6개사 공동홍보
	Good to Great Plaza 수출상담회	▪ **6월 19-20일 개최, 총 43개 기업 참가** ▪ 상담액 202 백만달러, 계약추진액 159 백만달러 ▪ Pin-point 상담회 형식, 대형 수출성약으로 연결 - 블루버드-G사 3년간 1.2억불, 에쎈테크-Honeywell 2년간 2천만불 등 ▪ 참가기업 43개사의 바이어 초청국으로 2014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73.6% 증가**
제도 개선 연구	연구용역	▪ 시장/상품・산업/기업/무역기능별 전략 도출 ▪ 세계일류상품은 차세대 발굴 강화, 관리 인프라 선진화, 국가 보증 통합브랜드로서 정체성 강화 등

○ **(선정 및 자격심사)** 전년대비 품목은 21개, 생산기업은 23개 증가

* **신규선정 :** ('13) 67品 76社 → ('14) 58品 67社

* **자격심사에 의한 탈락 :** ('13) 62品 59社 → ('14) 37品 44社

- 의료기기/용품(30.8%), 전자/IT(23.1%), 화학/의약품(11.5%) 순으로 신규 선정 품목이 많음

- 한편, **자료 미제출과 기업의 불참 결정에 의한 기업 탈락 비율이 높아** 제도의 편의성과 지원혜택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기업 탈락 사유는 자료미제출(48%), 기준 미충족(34%), 불참결정(11%), 생산중단/폐업(7%) 순

○ **(현재일류 승격)** 자격심사 대상인 51品 54社의 차세대일류상품 중 10品 10社가 현재일류상품 기준을 충족하여 승격함

* 호흡기질환바이러스유전자검사제품(씨젠), 전광판(삼익전자공업), 의료용핸드피스(마이크로엔엑스) 등

○ **(지원사업 성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상국(목표시장) 수출액 전년대비 49.5% 증가**

- 무역관 밀착지원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지원하는 **자가브랜드 수출지원 사업의 성과가 가장 높음**

< 지원사업 참가기업의 목표시장 수출액 증가(2013-2014) >

(천달러, %)

세부사업명	목표시장 수출액			전체 수출액증감		
	2013년	2014년	증감	2013년	2014년	증감
차세대 해외마케팅 지원 (91개사, 169개 목표시장)	95,160	128,261	**34.8**	718,657	847,498	17.9
수요맞춤형 공모사업 (33개사, 53개 목표시장)	128,550	171,365	**33.3**	881,931	1,006,339	14.1
자가브랜드 수출지원사업 (16개사, 20개 목표시장)	25,850	56,674	**119.2**	533,217	670,552	25.8
Good to Great Plaza (43개사, 43개 목표시장)	60,832	105,606	**73.6**	803,777	943,250	17.3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17개사 17개 목표시장)	30,012	49,623	**65.3**	189,517	187,977	-0.8
순기업수 기준 합계 (151개사, 298개 목표시장*)	**338,678**	**506,295**	**49.5**	**2,290,394**	**2,612,408**	**14.1**

* 지원기업 및 목표시장 중복 인정시 : 200개사 302개 목표시장

2.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지원내용(2015년 기준)

□ 해외마케팅 및 홍보 등 KOTRA 직접지원

세부사업명	설명	지원 대상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지원 (舊 자가브랜드)	* **기업 및 제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점유율 확대 지원** - (기대효과) 수출상품 제값받기 및 해외마케팅 효율성 제고 - 브랜드 컨설팅 → 브랜드 개선 → 브랜드 마케팅 복합지원 (선정년도 포함 3개년, 사업비 5천만원/년, **50% 기업부담**) - 브랜드 컨설팅 및 개선은 국내 수행사, 브랜드 마케팅은 KOTRA 무역관을 연계하여 추진, 자금은 KOTRA가 내규에 따라 직접 집행	현재, 차세대 기업 - 대기업 제외 - 매년 10개사 내외 신규선정
해외마케팅 자금지원 (舊 옵션식마케팅)	* **해외 마케팅 집중 확대를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지원** - 기업 개별 해외마케팅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개별/단체 전시회 참가, 기업 단독행사 개최 등) - 기업 당 1,400만원 내외 (사후정산 방식) - 무역관 수출 멘토링서비스를 부가로 제공 (미수출지역 무역관과 매칭하여 인콰이어리 발굴 등)	현재, 차세대 기업 - 대기업 제외 - 타기관 자금지원사업 참가기업 제외 (글로벌강소기업, 월드챔프기업 등)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Good to Great Plaza)	* **거래가능성이 높은 바이어 초청, 상담 및 공동 행사를 통해 수출확대 지원** - 일시/장소: 매년 5월 또는 6월 경, 서울시내 컨벤션 - 바이어 초청비용, MOU체결식 및 환영리셉션 등 지원 - 참가수수료 없음	현재, 차세대 기업 - 대기업 제외 - 미수출지역 바이어 초청 우선 등
해외전시회 세계일류상품 홍보관 (舊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대체)	* **해외 유명전시회 활용 세계일류상품 브랜드 및 선정기업 홍보** - 100sqm내외, 상품전시 + 공용상담공간으로 구성 - 상품전시, 1:1 상담주선, 네트워크 리셉션 개최 등 지원 - 2015년 참가전시회: ①플로리다 의료기기전(8.5-7), ②상하이 아시아전자전(11.11-13), ③마린텍차이나(12.1-4) (전기전자/의료기기/조선/소비재 품목, FTA 관련지역 우선) - 참가수수료 없음. 한국관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	현재, 차세대 기업 - 대기업 제외
한-중 FTA 비즈니스플라자 세계일류상품관	* **한-중 FTA Business Plaza 내 세계일류상품관을 설치하여 세계일류상품 전시 및 수출상담 지원** - 일시: 매년 4월 또는 5월 - 홍보관 장치 및 제품전시, 상담지원 - 참가 수수료 없음	현재, 차세대 기업 - 대기업 제외 - 규모: 20개사

□ 타 지원제도와 연계한 간접지원

유관기관	세부내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ATC 사업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무보/신보/기보	ㅇ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및 단기수출보험 보험한도 우대 ㅇ 보증·보험료 추가할인 혜택 제공
한국지식재산전략원	ㅇ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중기청	ㅇ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소요인원 추천 시 가점 부여
조달청	ㅇ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은행	ㅇ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로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 ㅇ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중소기업 희망컨설팅 제공 ㅇ 환위험 무료 컨설팅 및 관련상품 우대 지원 등

Ⅱ. 201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1. 신규선정 공고 (산업부 제 2015-433호, 2015. 8. 6)
2.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기준 변경
3. 2015년 세계일류상품 신규선정 및 자격심사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3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3호)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차세대일류상품 품목의 국가 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12-2014년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4.5%이며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CAGR 기준 2.2%임

** 예시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2.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업종별 간사기관)	'15.8.10~9.4
↓	
추천안 작성 및 추천위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15.9.7~9.18
↓	
선정안 작성 및 일류상품발전심의위* 심의 (KOTRA)	'15.9.21~11월
↓	
선정결과 확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5.12월

* 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산업부 무투실장(위원장), 학계, 연구소, 언론계, 업종별 단체 등 20명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8. 10(월) 09:00 ~ 9. 4(금) 18:00

□ 신청서류

①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2]

□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업종별 간사기관(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 KOTRA)에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생산기업 추가가 가능함.

□ 문의처

○ 선정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Tel. 044-203-4033)

○ 신청요령 : 업종별 간사기관(연락처 별첨)
KOTRA 중견기업지원팀(Tel. 02-3460-7233)

<붙임>

업종별 간사기관(신청서류 제출처)

업종 구분	간사기관	전화번호
섬유·생활용품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KOTRA(중견기업지원팀)_생활용품	02-528-4038 051-317-5202 02-795-9505 02-3460-7233
생물・화학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02-2088-7257 031-628-0041
디지털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02-6388-6136
반도체・전자부품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02-570-5261 02-3014-5711 070-4825-1105 031-8041-1770 02-786-7629
산업기계・플랜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02-369-7823 02-3452-6613
수송기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2112-8052 02-783-6954 02-761-1766 02-587-0016
철강금속・석유화학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철강협회	02-3668-6133 02-567-2313 02-559-3567
농산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061-931-0842 02-6300-8203
수산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51-797-4501
보건산업	한국제약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02-521-1301~2 070-8892-3834 02-785-3898 02-3470-8123
서비스산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3471-8135~8 02-761-9161
해당 간사기관 없는 품목	KOTRA(중견기업지원팀)	02-3460-7233

[양식 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1. 신청품목	한글		영문	
	구분	☐ 현재세계일류		☐ 차세대세계일류
		☐ 제조업		☑ 서비스업
	HS코드			
2. 품목개요	구분	☐ 미선정 품목(품목/기업 동시 신청)		☐ 기존선정 품목(기업만 추가) *품목선정연도: 년
	품목설명			

3. 품목 신청사유

※ 기존선정품목으로 기업만 추가하는 경우는 작성 불요

☐	3-1. 현재세계일류상품 (전년도기준, 선정요건 충족시 체크)		
1	(해당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 및 세계시장점유율이 5% 이상	☐	필수
2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	각호중하나 (중복가능)
3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4	(서비스업의 경우) 세계시장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	3-2.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전년도기준, 선정요건 충족시 체크)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각호중하나 (중복가능)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인증번호/인증 기술·제품명/인증년도 : ( )	☐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내용 : ( )	☐	

4. 기업 신청사유

☐	4-1.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전년도기준, 선정요건 충족시 체크)		
1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	☐	각호중하나 (중복가능)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액 1위	☐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	

☐	4-2.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전년도기준, 선정요건 충족시 체크)		
1	국내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	☐	각호중하나 (중복가능)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 인증번호/인증 기술·제품명/인증년도 : ( )	☐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기관/지정일 : ( )	☐	
4	최근 3년 이내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관련 장관상 - 상명/수상내용/수상년도 : ( )	☐	

5. 기업일반	기업명	한글	
		영문	
	주소	본사	
		공장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무역업등록번호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업종		
6. 기업현황	종업원수	(총 종업원) 명	
		(생산직) 명	(연구직) 명
		(사무직) 명	(기 타) 명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 없음	☐ 있음
		(설립연도)	(연구인력) 명
	회사연혁 및 소개		

7. 기업 성과

7-1. 기업과 해당품목 매출 및 수출실적 (최근 3년간)

구분	Y-2년	Y-1년	Y년(전년도)
기업 전체 매출액 A (백만원)			
해당 품목 매출액 B (백만원)			
매출비율 B/A (%)			
기업 전체 수출액 C (천불)			
해당 품목 수출액 D (천불)			
수출액 비율 D/C (%)			
자료 출처:			

7-2. R&D 투자

	Y-2년	Y-1년	Y년(전년도)	금년(전망)
R&D투자액(백만원)				
투자비율(%)				

* 투자비율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매출액

7-3. 재무성과

부채총액(백만원)	자기자본(백만원)	부채비율(%)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영업이익률(%)

*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자기자본×100,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매출액×100

7. 기업 성과	7-4. 기업의 특허관련 활동 (국내외 합계)

특허 (2014년 기준)	출원	건
	등록	건
	합계	건
특허관련 활동 자유 기술 (차별성, 특화된 기술 등)		

* 등록이 완료된 건은 출원건수에서 제외

7-5. 유관기관사업 선정

①	수출유망중소기업	☐
②	글로벌강소기업	☐
③	월드클래스 300	☐
④	혁신형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
⑤	녹색인증기업	☐
⑥	사회적기업	☐
⑦	서비스품질인증	☐
⑧	KOTRA 글로벌브랜드	☐
⑨	기타(_____)	☐

7-6. 해외 마케팅 활동 (전년도 기준)

해외마케팅 지출액	천불
	*인력 등 운영비 제외 순수해외 마케팅 사업비
수출액 대비 해외마케팅 지출액 비율	%
	*해외마케팅지출액/전체 수출액 x 100
수출전담인력	명
마케팅 활동 자유 기술 (종류, 지역 등)	

7-7. 기타 기업 성장성 및 경쟁력 관련 자유기술

8. 품목 현황

<세계시장 현황>

8-1. 해당 품목의 주요 국가별 생산 및 시장 점유율 (전년도 기준)

※ 기존선정품목에 기업만 추가 신청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 )위	(세계전체)
국가명							
생산액(백만불)							
비중(%)							(100)
생산량(_____)							
비중(%)							(100)

* 한국이 순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공란에 순위 기입 후 작성

* 생산은 해외 현지공장 생산도 포함되며, 생산량은 단위를 반드시 명시후 기재 (이하 같음)

자료 출처: _____

8-2. 해당 품목의 주요 기업별 생산 및 시장 점유율 (전년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 )위	(세계전체)
기업명							
소속국가							
생산액(백만불)							
비중(%)							(100)
생산량(_____)							
비중(%)							(100)

* 기업의 국가명은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명을 기입

* 자사가 순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공란에 순위 기입 후 작성

자료 출처: _____

<국내시장 현황>

8-3. 해당 품목의 국내 주요 기업별 국내 생산 및 국내시장점유율 (전년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 )위	(국내전체)
기업명							
생산액(백만불)							
비중(%)							(100)
생산량(_____)							
비중(%)							(100)

* 자사가 순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공란에 순위 기입 후 작성

자료 출처: _____

8-4. 해당 품목의 국내 주요 기업별 수출실적 (전년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 )위	(국내전체)
기업명							
수출액(천불)							
비중(%)							(100)

* 자사가 순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공란에 순위 기입 후 작성

*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직접수출, ②대행수출, ③간접수출, ④대북수출 등을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은 미포함)함.

* 단, 서비스업 품목의 경우 상기 수출액 이외 ①해외판매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②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함.

자료 출처: _____

9. 기업의 품목현황	

9-1. 해당품목의 자사 및 국가 수출 실적 (최근 3년간)
* 7-1. 기업과 해당품목 매출 및 수출실적 (최근 3년간) 참고

비 고	Y-2년	Y-1년	Y년(전년도)
해당품목 수출액(천불)	* 7-1. 기업과 해당품목 매출 및 수출실적 (최근 3년간) 참고		
해당품목 국가수출액(천불)			

9-2. 기업의 해당품목 주력시장 및 목표시장 형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주력시장 (국가명)			
주요활동 기술			

9-3. 기업의 해당품목 관련 특허 현황(전 기간)

국내 특허	출원	건	합계 건
	등록	건	
해외 특허	출원	건	합계 건
	등록	건	
특허관련 활동 자율 기술 (차별성, 특화된 기술 등)			

* 등록이 완료된 건은 출원건수에서 제외

9-4. 기업의 해당품목 관련 인증 및 수상 현황

	인증/수상	국내/해외	인증/수상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1					
2					
3					

9-5. 품목의 경쟁력, 시장성 및 성장성 자유기술

10. 담당자 정보	

구분	성명	직책	전화	팩스	e-mail
대표자					
인증담당자					
홍보담당자					
해외마케팅 담당자					

* 개인정보 작성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 필요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7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2]

[양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직·간접수출지원 사업 안내, 사후F/U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이메일 주소, 사무실 번호,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지원제도 안내, 추진, 성과관리, 사후F/U, 차기 사업 안내 등을 위해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귀하의 정정, 삭제 요구가 있을 때까지 보유합니다.

○ 제공해 주신 개인 정보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사로 선정된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수집 항목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성명 1 (인)
성명 2 (인)
성명 3 (인)
성명 4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첨부해야할 자료

1. 현재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시

○ 신청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국가별로 세계 5위 이내이고,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 상품의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신청 상품의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시

○ 신청 상품의 최근 3개년 수출증가율이 국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신청 상품이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시

○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기업별로 세계 5위 이내에 들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시

○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에 들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품목명"은 해당 기업의 고유 상품명이 아닌 통용되는 일반 품목명이어야 함

2. 신청서상의 HS코드는 HS 10단위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함. 다만 6단위 또는 8단위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6단위, 8단위만 표기

3. **각종 제출서류상의 통계일치 필요,** 기준 **단위표기에** 주의(생산액: 백만불, 수출액: 천불)
   ※ 불일치할 경우 선정 적합여부 검토가 어려워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차세대일류상품의 선정기준 중 신기술, 신제품 인증상품이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한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상품과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 상품을 말함

5.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선정함.
   ※ 상품 자체만 신청하거나, 상품과 기업 동시에 신청했으나 신청기업이 선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기업이 탈락하고 상품만 선정된 경우, 선정실익이 없어 선정에서 제외함
   ※ **기 선정된 상품(세계일류상품 리스트 참조)에 대한 생산기업 추가를 원하는 기업**은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선정 가능함

6. **기업의 해당제품 수출실적**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통계(KITA)를 원칙으로 하되 관세청 자료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수출실적 확인서류, 기타 입증 가능한 서류 모두 가능함
   ※ **현재 및 차세대일류상품 생산액 및 수출액 인정기준**

구 분	내 용
생산액	국내 생산총액 및 국내 기업(모기업이 한국 국적)의 해외 생산총액 합산
수출액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직접수출, ②대행수출, ③간접수출 ④대북수출 등을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은 미포함)함. 수출액 인정은 수출통관액(관세청 집계로 무역협회가 확인) 기준임. 단, 서비스업 품목으로 수출통관액이 집계되지 않는 경우 ⓐ해외 판매 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의 합산으로 산정.

7. **세계시장과 국내업계의 주요 국가별/기업별 생산 및 시장점유율(생산액/생산량/비중)**은 Display Bank(디스플레이뱅크), i-Supply(아이서플라이), Clarksons(클락슨), Gartner(가트너), SERI(삼성경제연구소) 등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보고서나 국내 증권사가 배포하는 기업동향, 해당 품목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자료, 업종별 협회나 간사기관 등을 통한 자료 모두 가능함. 그 외 내부자료 또한 논리적 근거가 합당하다면 참고 가능하므로 가능한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함

8. 신청서류는 **업종별 간사기관**에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토록 함

2.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기준 변경

□ 추진 배경

○ 최근 세계일류상품 신규 선정 품목수가 정체 중이며, 미래 수출동력 창출에 중요한 서비스업 및 차세대일류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빈약

* 신규 선정 품목수 변동추이 : ('12) 93개 → ('13) 67개 → ('14) 58개
* 서비스업 품목수 및 비중 : 22개 / 3.3% (22/660개 품목)
* 차세대일류상품수 및 비중 변화추이 : ('12) 190개, 29.9% → ('13) 178개, 27.8% → ('14년) 184개, 28.3%

○ 복잡하고 모호한 선정기준 및 기업이 제시하는 미래 성과 예측이 부정확하여 부적격 기업 선정 가능성 상존

* 차세대일류상품 기업 중 28%(54개사)의 최근 3년 수출이 감소세

□ 추진 경과

○ 발전심의위원회 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개선 요구 ('14.11.7)

- 비제조업 품목 확대 및 부적격 기업 선정 리스크 축소 필요

○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기업 및 간사기관 간담회 개최 ('15.2.11)

- 서비스업 선정기준 완화, 수출액 산정기준 현실화 등 제안

* 산업부, KOTRA, 산업연구원, 서비스협단체, 서비스업 기업 등 14명 참가

○ 선정기준 개편을 위한 외부기관 연구용역 추진 ('15.4~5월)

- 서비스업·차세대 품목 선정 확대 및 선정기준의 객관성 제고 목적

* 수행기관 : 숙명여대 경영학과 오준석 교수,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정진섭 교수

○ 대표 간사기관 대상 연구 중간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 ('15.5.8)

- 차세대일류 육성기간 연장, 서비스업 수출액 정의, 객관성 제고 등 제안

* 산업부, KOTRA, 전자산업진흥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IT서비스협회 등 10명 참가

○ 선정기준 변경(안)에 대한 간사기관 의견 수렴 ('15.6월초)

□ 선정기준 변경(안)

방향	주요내용	변경 내용
업종구분 간소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준 통합 - 복잡한 업종별 선정기준 간소화	○**(변경전)** 현재/차세대, 제조업/서비스업, 품목/생산기업 구분 ○**(변경후)** 현재/차세대, 품목/생산기업 구분
서비스 품목 · 차세대 일류상품 선정 확대	○차세대일류상품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 대상 확대 - 수출유망중소기업 추가	○**(변경전)** 수출실적 3위, 서비스품질우수인증, 장관상 수상 기업 ○**(변경후)** 수출실적 3위, 서비스품질우수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 장관상 이상 수상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육성기간 5년→7년 -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은 수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에 긴 시간 소요	○**(변경전)**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변경후)**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차세대 일류상품 선정의 신뢰성 강화	○검증 가능한 실적으로 평가 (과거 및 현재 성과) ○간사기관 추천위원회 심의에서 사용할 평가표 제시	○**(변경전)** 기업이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을 예측치로 제시하고 타당성을 평가 ○**(변경후)** 최근 3년간 매출 및 수출성장율, 재무성과, 특허현황 등으로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을 종합 평가
	○육성기간 연장에 따라 무분별한 품목 선정 방지를 위해 연평균 수출액 증가조건 추가	○**(변경전)** 조항 없음 ○**(변경후)**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정부 정책변화 반영	○신성장동력산업 우대조항을 범정부 육성 대상 산업(미래 시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산업)으로 확대	○**(변경전)**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면 차세대 일류로 선정 가능 ○**(변경후)** 정부로부터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는 차세대일류로 선정 가능
차세대 일류상품 자격심사 유예기간 단일화	○차세대 자격심사 유예기간 단일화 - 제조업(3년), 서비스업(4년) 유예기간을 3년으로 단일화	○**(변경전)** 제조업 3년, 서비스업 4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재일류상품 기준 충족 여부 심사 ○**(변경후)** 업종 구분없이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재일류상품 기준 충족 여부 심사

□ 현재일류상품 선정기준

ㅇ 기존 선정기준

구분	상품/기업	선정기준
제조업	현재일류상품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서비스업	현재일류상품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인 서비스 상품, 또는 연간 수출규모 5백만불 이상인 서비스 상품

ㅇ 변경 선정기준

구분	상품/기업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현재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 현재 및 차세대일류상품 생산액 및 수출액 인정기준은 표 참고 (p.3)		

□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ㅇ 기존 선정기준

구분	상품/기업	선정기준
제조업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서비스업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ㅇ 변경 선정기준

구분	상품/기업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 차세대일류상품 선정기준

○ 기존 선정기준

구분	상품/기업	선정기준
제조업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서비스업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연간 500만불 이상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상품

* 신성장동력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 변경 선정기준

구분	상품/기업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현재 및 차세대일류상품 생산액 및 수출액 인정기준은 표 참고 (p.3)		

* 3인 이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추천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평가표 참조)

** 차세대일류상품 품목의 국가 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 예시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 기존 선정기준

구분	상품/기업	선정기준
제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서비스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변경 선정기준

구분	상품/기업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현재 및 차세대일류상품 생산액 및 수출액 인정기준**

구 분	내 용
생산액	국내 생산총액 및 국내 기업(모기업이 한국 국적)의 해외 생산총액 합산
수출액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직접수출, ②대행수출, ③간접수출 ④대북수출 등을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은 미포함)함. 수출액 인정은 수출통관액(관세청 집계로 무역협회가 확인) 기준임. 단, 서비스업 품목으로 수출통관액이 집계되지 않는 경우 ⓐ해외 판매 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의 합산으로 산정

첨부) 정부 육성대상 지정 산업 설명자료(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서비스산업) 1부

< 첨부. 정부 육성대상 지정 산업 설명자료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서비스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

○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 배경 : 미래부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부 산업엔진프로젝트를 통합*하여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확대 개편

*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통합 결정('14.12.22, 제3차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 실행계획

- '15년에 약 1조원 투자*를 시작으로 '20년까지 약 5.6조원을 투자하여, '24년까지 수출 1천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

* 주요 분야별 투자액(잠정치) : 사물인터넷 772억원, 지능형 로봇 700억원, 착용형 스마트기기 983억원, 5세대(G) 이동통신 771억원, 스마트 자동차 282억원, 지능형 반도체 608억원

<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 19대 분야 >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에너지산업	기반산업
① 지능형로봇(공)	⑥ 스마트자동차(공)	⑩ 맞춤형 웰니스케어(공)	⑮ 융복합소재(공)
② 착용형 스마트기기(공)	⑦ 심해저 해양플랜트(공)	⑪ 신재생 하이브리드(성)	⑯ 지능형 반도체(성)
③ 실감형콘텐츠(성)	⑧ 5G 이동통신(성)	⑫ 재난안전시스템(성)	⑰ 사물인터넷(성)
④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엔)	⑨ 수직이착륙무인기(엔)	⑬ 직류송배전시스템(엔)	⑱ 빅데이터(성)
⑤ 가상훈련시스템(엔)	-	⑭ 초소형 발전시스템(엔)	⑲ 첨단소재가공시스템(엔)

* **(성)** : 미래성장동력 단독분야 / **(공)** : 공동추진분야 / **(엔)** : 산업엔진 단독분야

□ 7대 유망 서비스산업

○ 배경 :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7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3개년 핵심과제를 확정**

* 관계부처 합동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 태스크포스 가동('14년 1월)

**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각 분야별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발표('14년 8월)

○ 지정 대상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 기대효과 : 총 5년간 15조원에 달하는 투자효과와 18만명의 고용창출

3. 2015년 세계일류상품 신규선정 및 자격심사 계획

1) 세계일류상품 신규선정 및 자격유지 심사 개요

□ 추진 목적

○ 성장잠재력이 높은 상품 발굴을 통한 수출동력 확충 및 기존 인증품목에 대한 자격유지 심사를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세계일류상품의 실태 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과 측정 및 시사점 도출

□ 추진 근거 :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에서 7월말한 개정 공고 준비 중

□ 사업 개요

○ **(신규선정)**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품목 및 생산기업(현재일류), 또는 향후 7년 이내 전환 가능한 상품 및 생산기업(차세대)을 발굴

○ **(자격유지 심사)** 기존 인증 품목 및 생산기업의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 **자격의 유지/제외/승격(차세대→현재일류)을 심사**

□ 그 간의 사업 실적

○ '01~'14년까지 20차례 신규선정과 12차례 자격유지심사를 거쳐 **총 660品, 750社** 자격 유지

○ 차세대→현재일류 승격률이 40%가 넘고, 세계일류상품 기업의 수출액은 국가 총 수출의 36.7%를 차지

□ 2015년 목표

○ 차세대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세계일류상품 품목 및 기업 확대

* 총 인증상품수 : ('14) 660品 750社 → ('15)700品 800社

* 신규선정상품수 : ('14) 59品 → ('15) 70品

□ 추진 일정 : 2015년 8월 ~ 12월

2) 신규선정 및 자격유지 심사 방법 및 기준

□ 신규선정 및 자격유지 심사 방법

① 신규 선정

○ 산업부의 신규선정 공고에 따라 진행하며 간사기관*이 모집 및 신청접수를 담당

* 품목별 29개 협단체로 구성. 관련된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은 KOTRA가 담당

○ 업종별 추천위 및 일류상품발전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확정

* 산업부 차관(위원장),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 언론계 등 20명

< 신규선정 절차 >

산업부	→ (공고)	기업, 단체	→ (신청)	업종별 간사기관	→ (상정)	업종별 추천위	→ (추천)	신규선정 자격심사	→ (상정)	일류상품 발전심의위*

② 자격유지 심사

○ 자격유지 심사 대상* 품목 및 생산기업의 자격 유지/승격/제외를 결정

* 현재 세계일류상품은 선정 후 1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3년이 경과한 품목 및 생산기업

< 자격유지 심사 절차 >

KOTRA	→ (공고)	기업, 단체	→ (제출)	자격유지 심사	→ (상정)	일류상품 발전심의위*

③ 생산 및 수출실적 조사

○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의 생산, 수출 현황, 점유율 등을 조사하여 세계일류상품 관련 정보 개방 및 대외 홍보에 활용

○ **2015년 신규선정** 되거나 **자격유지 심사에 의해 자격유지가 결정**된 품목 및 생산기업 대상으로 조사

< 생산 및 수출실적 조사 내용 >

구 분	주요 항목
품목 현황	한국의 세계일류상품 세계시장 점유율 국가별 세계일류상품 보유 현황 한국의 세계일류상품 수출 현황
기업 일반 현황	- 기업 업종, 규모, 종사자 수, 자본금, 매출액 및 R&D 등
기업의 품목 현황	- 세계일류상품 매출 현황 - 세계일류상품 수출 현황

□ 신규선정 및 자격유지 심사 기준 (잠정)

① 신규 선정 심사기준

※ 2015년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변경 추진
- 기존 선정기준 적정성 분석을 통해 신규 선정기준(안) 마련, 산업부에서 현재 검토 중

상품/기업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규모기준만 충족해도 가능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국내외 공인된 상을 수상한 기업

* 상기 선정기준은 산업부 검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7월말한 요령 개정 공고 예정

② 자격유지 심사 기준

○ **(현재일류)** 직전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에 따라 자격 유지 또는 제외 결정
- 현재일류상품 신규선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자격을 유지
- 기준을 미달하거나 실적 미제출/사업 포기 시 자격 제외

○ **(차세대일류)** 직전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에 따라 승격, 자격 유지 또는 제외 결정
- 현재일류상품 선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현재일류상품으로 승격
- 현재일류상품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선정 후 7년 경과한 경우 자격 제외
- 현재일류상품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최근 3년 수출이 연평균 5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3년 연평균 수출액이 1만달러 미만인 경우 자격 제외
- 이외의 경우에는 자격 유지

3) 신규선정 및 자격유지 심사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도

구분	단계	세부내용	추진시기	추진주체
공통	신규선정/자격유지 심사 계획 공고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8월 초	산업부, KOTRA
		간사기관 설명회 개최	8.10	KOTRA
		자격심사 수행사 선정(나라장터 입찰)	8월 중	KOTRA
↓				
신규선정	신청서 접수	대상기업에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9.4	간사기관
	추천위원회 개최	추천위원회 구성 및 공지	~ 9.4	간사기관
		추천위원회 개최	9.7 ~ 9.16	간사기관
		추천위원회 결과보고	~ 9.18	간사기관
자격유지 심사	자격유지 실사	자격유지 심사 설문지 제작	8월 초	수행사
		생산 및 수출실적 조사 안내	~ 9.18	수행사
		자료 제출	~ 9.18	기업
↓				
공통	자료 검증 및 자격심사	데이터 정리(미제출 항목 확인, 전년도 자료 비교 등)	9월 중	수행사
		제출자료 검증	9 ~ 10월	수행사
		결과보고서 및 발전심의위 안건 작성	9 ~ 10월	수행사, KOTRA
↓				
공통	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015년 신규선정 및 자격유지 결과 확정	11.18(잠정)	산업부, KOTRA
↓				
공통	결과 통보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	인증서 수여식 수행사 선정	10월 중	KOTRA
		신규선정 및 자격유지 심사 결과 통보(엠바고 필요)	12월 초	KOTRA
		보도자료 등 대외공개 자료 작성	11 ~ 12월	KOTRA
		인증서 수여식 개최	12.16(잠정)	수행사, KOTRA

□ 세부 단계별 추진 계획

1) 간사기관 설명회 개최

○ (목적)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유망품목 발굴 확대 및 협력 제고

○ (일시/장소) 2015. 8. 10 14:00 / KOTRA 10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29개 간사기관 담당자, 간접지원기관 담당자 등

○ (내용) 변경된 선정기준 및 절차 공지, 선정기업 지원사업 안내 등

2) 신규선정, 자격심사 및 생산/수출실적 조사

○ (목적)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자격심사의 완성도 및 신뢰도 제고

○ (기간) 2015년 8월 ~ 12월

○ (내용) 자격유지 심사, 생산/수출실적 실사 및 신청서류 검증 등

3) 업종별 추천위원회 개최

○ (목적) 세계일류상품 선정 객관성 제고 및 업종별 네트워크 기반 확대

○ (추천위 구성) 간사기관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구성 가능하며, 품목 전문가 3~10인으로 구성

○ (일정) 9월 중(9.7~16) 개별 개최 후 9.18한 KOTRA에 결과보고

○ (간사기관 예산지원) 기업 설명회 및 추천위 개최비용, 추천 인센티브 지급

- 설명회 개최지원금 : 세계일류상품 사업 홍보 및 품목 동향정보 교류 목적으로 설명회 개최 시 건당 5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추천위 개최지원금 : 1개 기업 이상 추천 시 120만원 지급

  * 추천위원 확대를 통한 심사의 객관성 제고 목적으로 인상, ('14) 50만원 → ('15) 120만원

- 추천 인센티브 지급 : 추천에 의해 선정된 기업 1개사 당 20만원 지원

4) 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목적) 신규선정 및 자격유지 심사 확정 및 주요 사업운영 방향 결정

○ (일시/장소) 2015. 11. 18 (잠정) / 장소 미정

○ (참석자) 경제단체, 학계, 언론계 발전심의위원 20명 이내

- 통상적으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회의 주재

○ (안건내용)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 운영계획 보고
- 2015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신규선정(안)
- 2015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자격유지심사(안) 등

5) 2015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

○ (목적) 신규 선정 기업 인증서 수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 및 홍보기회 마련

○ (일시/장소) 2015. 12. 16 15:00 (잠정) / 코엑스 그랜드볼룸

○ (참석자) 신규선정 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약 300명

○ (프로그램)

- 세계일류상품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사업 소개
- 신규선정 기업 대상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
- 신규선정 및 승격기업 제품 홍보 전시관 운영 등

Ⅲ. 신규선정 단계별 세부운영지침

1. 신청 및 접수
2. 추천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1. 신청 및 접수

단계	세부내용	추진시기	추진주체	관련자료
신규선정/자격유지 심사 계획 공고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8월 중	산업부, KOTRA	산업부 공문
	간사기관 설명회 개최	8.10	KOTRA	간사기관 설명회 자료
	자격심사 수행사 선정(나라장터 입찰)	8월 중	KOTRA	
↓				
신청서 접수	대상기업에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9.4	간사기관	신규신청서 및 관련자료
	신규신청서 및 관련자료 작성 제출		기업	
	서류보완 요청 및 검토		간사기관, KOTRA	

□ 회원사 및 비회원사 대상 홍보 및 신청서 작성 지원 독려

○ 차세대 품목,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원사 대상 참여 독려 (Ex. E-mail, 간사기관 홈페이지 등 활용 공지)

○ 기존에 'KOTRA 글로벌브랜드'로 선정되었던 기업 중,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적극 지원

○ 시장규모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간사기관 보존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서 작성 지원

□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세계일류상품 품목명 및 유사성 검토

- 품목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된 용어를 사용하며, 업종별 간사기관은 신청기업에서 명기한 세계일류상품 품목명이 너무 협소하거나 광범위한 경우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품목명 변경 가능
- 신규 신청서류 접수 시 HS Code, MTI 분류 체계[1]를 통해 기존 선정품목과의 중복 또는 유사성 검토

1)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산업별·품목별 수출입분류체계로, 비슷한 종류 수개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6단위)(출처: 무역협회홈페이지)

-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간에 유사 상품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간사기관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리스트화 필요

○ 신청서류의 신뢰성 확인

- 업종별 간사기관은 신청기업의 해당품목 수출실적의 경우 무역협회 통계(KITA)를 원칙으로 하되, 해외에 공장이 있는 경우 등 불가능할 경우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 확인서류, 기업 내부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

-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수출, 대행수출, 간접수출, 대북수출 등을 포함함. 단, 서비스업 품목의 경우 상기 수출액 외에 ①해외판매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②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매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함.

<생산액 및 수출액 인정 범위>

구 분	내 용
생산액	국내 생산총액 및 국내 기업(모기업이 한국 국적)의 해외 생산총액 합산
수출액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직접수출, ②대행수출, ③간접수출 ④대북수출 등을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은 미포함)함. 수출액 인정은 수출통관액(관세청 집계로 무역협회가 확인) 기준임. 단, 서비스업 품목으로 수출통관액이 집계되지 않는 경우 ⓐ해외 판매 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의 합산으로 산정

- 세계시장규모, 시장점유율은 신청기업에 해당 수치를 추정한 근거를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검토 Display Bank(디스플레이뱅크), i-Supply(아이서플라이), Clarkson(클락슨), Gatner(가트너), SERI(삼성경제연구소) 등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보고서나 국내 증권사가 배포하는 기업동향, 해당품목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자료, 업종별 협회 혹은 간사기관 등을 통한 자료 가능

- 업종별 간사기관은 신청기업에서 제작한 일반상거래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신청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것이 없는지 확인
- 업종별 간사기관은 신청기업의 기술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 보도자료 등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 검토
- 신청서 작성 중 부득이하게 작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신청서에 사유를 명기하도록 유도
  (※ 단, 선정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작성)

2. 추천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단계	세부내용	추진시기	추진주체	관련자료
추천위원회 개최	추천위원회 구성 및 공지	~ 9.4	간사기관, KOTRA	
	추천위원회 상정 안건 준비	~ 9.7	간사기관, KOTRA	
	추천위원회 개최	9.7 ~ 9.16	간사기관	평가서
	추천위원회 결과보고	~ 9.18	간사기관	평가서, 추천양식, 추천총람표
↓				
자료 검증 및 자격심사	데이터 정리(미제출 항목 확인, 전년도 자료 비교 등)	9월 중	수행사	
	제출자료 검증	9 ~ 10월	수행사	
	결과보고서 및 발전심의위원회 안건 작성	9 ~ 10월	수행사, KOTRA	
↓				
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015년 신규선정 및 자격유지 결과 확정	11.18(잠정)	산업부, KOTRA	신규신청·자격유지 발심위안건자료

□ 추천위원회 구성

○ 업종별 간사기관은 신청서류에 대한 추천심의를 위해 요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품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신청기업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 및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를 추천위원으로 위촉 불가

○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추천위원회 운영

○ 추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사 업종의 2개 이상의 간사기관이 공동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 간사기관에서 신청품목을 취합하여 추천위원회 개최 가능

○ 신청품목 중 해당 업종의 간사기관이 없는 경우 KOTRA가 추천위원회를 개최하며, 업종별 간사기관에서 접수 시에 신청품목이 해당 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타 간사기관으로 이관 가능

○ 업종별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세부사항은 업종별 간사기관이 KOTRA와 상의하여 추진

□ 추천위원회 심의

○ 신청서류 심의

- 추천위원은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제품 홍보자료, 기술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 보도자료 등을 검토
- 추천위원은 신청 서류의 내용이 현재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의 요건에 충족되는지에 대해 심의
- 특히 차세대 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주어진 평가표 양식에 따라 추천위원별로 신청품목 및 생산기업에 대해 평가

○ 종합토론

- 추천위원장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경우 비공개로 종합토론을 실시
- 추천위원장은 종합토론을 실시함에 있어서 추천위원에게 균등한 토론의 기회를 부여
- 종합토론 완료 후 현재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의 추천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추천 품목수가 다수일 경우 반드시 추천 순위를 정하여 추천, 추천순위는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순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함

○ 기타

- 업종별 간사기관은 필요시 신청기업체에 제품을 시연 및 설명
- 업종별 간사기관은 추천위원회에 제공한 심의자료를 취합하여 보관
- KOTRA는 필요시 업종별 간사기관에 추천위원회 심의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종별 간사기관은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

□ 추천위원회 결과 검토 및 상정

○ 추천시 탈락품목에 대한 검토의견도 같이 제출

○ 업종별 간사기관은 추천위원회 개최 후 업종별 추천위원회 추천 기한까지 추천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KOTRA에 제출해야 함

①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평가서
③ 추천양식
④ 추천총람표
⑤ 업종별 추천위원회(심사평가위원) 명단
⑥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업종별 간사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 설명회 개최지원금 : 세계일류상품 사업 홍보 및 품목 동향정보 교류 목적으로 설명회 개최 시 건당 5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추천위 개최지원금 : 1개 기업 이상 추천 시 120만원 지급

○ 추천 인센티브 지급 : 추천에 의해 선정된 기업 1개사 당 20만원 지원

※ 예산지급절차 : 발전심의위원회(11월) 이후 간사기관 계좌로 지급

[붙임1] 추천위원회 관련 양식

< 차세대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후보 추천위원회 평가서 >

<추천위원회 심의 사항>
1. 본 평가서는 '기업 및 상품평가', '심사자 자율평가'의 두 항목으로 구성
2. 각 항목의 배점은 기업 및 상품평가 100점, 심사자 자율평가 ±10점으로 배정
3. 기업 및 상품 평가는 5단계(매우 긍정 - 긍정 - 보통 - 부정 - 매우 부정)으로 평가
4. 추천위원의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평가 결과를 '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로 결정
5. 3인 이상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평가가 '가'인 경우 최종 후보로 추천하며 총점 합계에 따라 추천순위 결정

□ 기업 및 상품 평가

기업명									
품목명									
항목	요소	평가근거	질 문	배점	매우긍정 - - - - 매우부정				
기업	경쟁력	종업원수, 부설연구소 유무, R&D비율, 특허수, 유관기관사업선정유무,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등	① 목표달성을 위한 기업의 인적구성이 적절하고, 정부 지원 사업 등 내·외부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② 기업은 기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R&D 활동 및 투자에 적극적인가?	10	10	8	6	4	2
			③ 동종산업군 평균을 고려하여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평가할 때, 자산을 안정적,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미리 제시된 업종별 평균치를 고려하여 자율적 평가 - 단, 부채비율이 기준치(250)이상일 경우 '0점'	5	5	4	3	2	1
	성장성	매출액, 수출액, 수출전담인력, 마케팅활동, 특허인증 등	④ 향후 기업의 매출 및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10	10	8	6	4	2
			⑤ 기업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특허 및 인증 취득, 전담인력 보유 등 마케팅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가?	15	15	12	9	6	3
상품	시장성	품질·서비스 특허 및 인증, 수상실적, 품목설명, (시장규모, 수출규모) 서비스품질인증, 목표시장형태 등	⑥ 해당 상품의 특허 현황 등을 평가할 때, 해당 상품의 핵심 기술은 모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체 가능성이 희박하여 희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10	10	8	6	4	2
			⑦ 해당 상품의 국내외 인증 및 수상경력을 평가할 때, 해당 상품은 외부로부터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가?	10	10	8	6	4	2
			⑧ 해당 상품의 유통단계의 사전 및 사후관리 수준은 소비자의 상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5	5	4	3	2	1
	성장성		⑨ 향후 해당 상품의 매출 및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15	15	12	9	6	3
			⑩ 해당상품은 타 산업 발전 및 국가 수출확대에 파급효과가 높아 상품가치가 높은가?	10	10	8	6	4	2
총점	100점			점					

□ 심사자 자율평가

심의 의견	점수 (최대 ±10점)
※ 평가항목에 예시되지 않은 심의위원의 주관적 평가를 기술 (최대 ±10점을 총 평가 점수에 합산)	점

□ 심의위원 평가 종합

평가 점수			심의 결과	
기업 및 상품평가	자율평가	총점		
점	점	점	가	부

상기 추천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 . .

소 속: _____

직 위: _____

성 명: _____ (인)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추천양식

세계일류상품	구분	현재(　　) 차세대(　　)
	품목명	
	한국의 해당품목 수출 (단위: 백만불, 전년말 기준)	
	- 현재: 세계시장점유율(순위) (단위: %) - 차세대: 경쟁력	
	해외경쟁업체	
품목설명		
품목분류	HS CODE	MTI 분류
품목유사성 유무	☐ 기존선정품목과 유사	☐ 과거탈락품목과 유사 ☐ 해당없음
유사성에 대한 상세설명	기존품목 중 유사품목명: (선정연도:)	
	* 기존 선정되었던 품목과 유사함에도 선정된 이유를 상세히 기재	
추천 및 탈락사유		

세계일류기업	기업명	
	기업의 해당품목 수출 (단위: 백만불, 전년말 기준)	
추천 및 탈락사유		

※ 추천사유는 현재세계일류상품(품목 및 기업), 차세대세계일류상품(품목 및 기업)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업종별 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추천양식 작성 예]

세계일류상품	구분	현재(○) 차세대( )		
	품목명	중형 LPG 운반선 (Medium ranged LPG Carrier)		
	한국의 해당품목 수출 (단위: 백만불, 전년말 기준)	304		
	- 현재: 세계시장점유율(순위) (단위: %) - 차세대: 경쟁력	100%(1위)		
	해외경쟁업체			
품목설명	- LPG 운반선은 강한 휘발성과 인화성을 가진 화물의 특성상 화재나 폭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 최대 영하 50℃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저온용 강재로 제작한 '카고탱크'가 탑재되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선박임			
품목분류	HS CODE	8901-90-1000	MTI 분류	746120
품목유사성 유무	■기존선정품목과 유사	□ 탈락품목과 유사	□ 해당없음	
유사성에 대한 상세설명	기존품목 중 유사품목명: LPG운반선 (선정연도: 2007)			
	- (예) 기존 선정된 품목과 유사하나 신기술도입으로 품목에 차이가 있어 선정함(차이점 및 이유 상세히 기재 필)			
추천 및 탈락사유				

세계일류기업	기업명	(주)현대미포조선
	기업의 해당품목 수출 (단위: 백만불, 전년말 기준)	204
추천 및 탈락사유	-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세계 1위 -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중 수출실적 1위 - 수출금액이 동종상품 수출총액의 87%를 차지 - 주요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수출 진흥에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추천사유는 현재세계일류상품(품목 및 기업), 차세대세계일류상품(품목 및 기업)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업종별 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

[추천총람표]

추천총람표(상품) 추천총람표(기업)

감사기관 명 :

	현재 밀류상품			차세대 밀류상품				현재 밀류상품 생산기업			차세대 밀류상품 생산기업			
순번	품목명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등)	추천사유	품목명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등)	추천사유	추천순위	기업명	수출품목	추천사유	기업명	수출품목	추천사유	추천순위
1														
2														
3														
4														

* 차세대 밀류상품 및 기업은 반드시 추천순위 기재

추천된 현재 및 차세대 수	개수
총 상품 수	개
총 기업 수	개
총 상품 및 기업 수	개

※ 해당 양식은 별도 송부 예정

[업종별 추천위원회(심사평가위원) 명단]

20 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일시: 20 . . (00:00), 장소: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연락처	E-mail

[붙임2]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3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0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정 2002. 8. 22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68호
개정 2005. 3. 17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70호
개정 2005. 9. 26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38호
개정 2006. 7. 24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15호
개정 2008. 7. 3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98호
개정 2009. 4. 16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50호
개정 2010. 5. 28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30호
개정 2010. 11. 2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28호
개정 2012. 6. 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81호
개정 2013. 5. 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73호
개정 2014. 6. 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01호
개정 2015. 8. 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등의 수출·수입의 지속적 증대를 통한 무역진흥을 위하여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세계일류상품”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의거하여 모

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치된 기업을 말한다)이 생산하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요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한다.

2. "현재세계일류상품"이라 함은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가는 점 등을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요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한다.
3.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이라 함은 향후 7년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요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한다.
4.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라 함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요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일류상품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
2.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3. 세계일류상품의 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세계일류상품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국제협력사업
5. 기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추진체제

제4조(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한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무역과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업종별 간사기관 및 추천위원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선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종별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간사기관이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품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업종별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추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 이상의 간사기관이 공동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호, 제2호의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기관이 되며,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별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이 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예산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세계일류상품의 선정 및 사후관리

제7조(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①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이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일 것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상품은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이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은 세계일류상품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세계일류상품 선정절차) ①자사가 생산하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이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간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사기관·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단체는 기업의 신청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을 받은 간사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 추천안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추천안을 각각 작성,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간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안 작성, 심의 및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간사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세계일류상품 선정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간사기관의 추천내용이 이 요령이 정한 선정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간사기관과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제출한 세계일류상품 선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①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 생산기업이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②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 생산기업이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이나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절차) ①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간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을 받은 간사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추천안 및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추천안을 각각 작성,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안 작성, 심의 및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간사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간사기관의 추천내용이 이 요령이 정한 선정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기관과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제출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인증서 발급 및 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및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선정 사실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또는 그 생산기업을 인수받은 기업 중 상호, 품목명에 대하여 인증서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기존 인증서 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5. 생산규모, 수출규모 자료(기업 양수도에 의한 상호 변경에 한함)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업체의 변경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된 인증서를 신청업체에 교부한다.

1. 상호 변경 : 선정 당시의 선정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2. 품목명 변경 : 선정 당시의 품목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제12조(현재세계일류상품 자격심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재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하여 선정 후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매년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

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13조(차세대세계일류상품 자격심사 및 졸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차세대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하여 최초 품목 선정 후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매년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전환되며, 최초 품목 선정 후 7년이 경과한 때까지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서 제외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품목 및 생산기업의 수출증가율이 국내 전체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선정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품목 선정 후 7년이 경과하기 전에라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세대세계일류상품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 당시와 비교하여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이 개선되고 향후 3년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재선정할 수 있다.

제13-1조(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사후관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선정된 이후에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제13조의 자격심사와 관계없이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대표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즉시 동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도 중단한다.

제14조(자격심사 협조의무) ①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격심사 대상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세계일류상품 발전사업

제15조(세계일류상품 국내외 전시회 개최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국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세계일류상품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행사 개최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해외전문전시회 참가 또는 마케팅 행사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일류상품 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에 관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기술,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일류상품 로고의 사용) ①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자사의 생산제품이 세계일류상품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로고(별지 제3호 서식)를 해당 제품의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로고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12조 및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로고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일류상품 명품 브랜드 선정·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세계일류상품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및 인지도를 갖춘 브랜드를 선정·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평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실적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개선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의 중단 및 축소)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로고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1. 신청품목	한글		영문	
	구분	☐ 현재세계일류		☐ 차세대세계일류
		☐ 제조업		☐ 서비스업
	HS코드			
2. 품목개요	구분	☐ 미선정 품목(품목/기업 동시 신청)		☐ 기존선정 품목(기업만 추가) *품목선정연도: 년
	품목설명			

3. 품목 신청사유

※ 기존선정품목으로 기업만 추가하는 경우는 작성 불요

☐	3-1. 현재세계일류상품 (전년도기준, 선정요건 충족시 체크)		
1	(해당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 및 세계시장점유율이 5% 이상	☐	필수
2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	각호중하나 (중복가능)
3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4	(서비스업의 경우) 세계시장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	3-2.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전년도기준, 선정요건 충족시 체크)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각호중하나 (중복가능)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인증번호/인증 기술·제품명/인증년도 : ( )	☐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내용 : ( )	☐	

4. 기업 신청사유

☐	4-1.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전년도기준, 선정요건 충족시 체크)		
1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	☐	각호중하나 (중복가능)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액 1위	☐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	

☐	4-2.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전년도기준, 선정요건 충족시 체크)		
1	국내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	☐	각호중하나 (중복가능)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 인증번호/인증 기술·제품명/인증년도 : ( )	☐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기관/지정일 : ( )	☐	
4	최근 3년 이내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관련 장관상 - 상명/수상내용/수상년도 : ( )	☐	

5. 기업일반	기업명	한글	
		영문	
	주소	본사	
		공장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무역업등록번호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업종		
6. 기업현황	종업원수	(총 종업원) 명	
		(생산직) 명	(연구직) 명
		(사무직) 명	(기 타) 명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 없음	☐ 있음
		(설립연도)	(연구인력) 명
	회사연혁 및 소개		

7. 기업 성과

7-1. 기업과 해당품목 매출 및 수출실적 (최근 3년간)

구분	Y-2년	Y-1년	Y년(전년도)
기업 전체 매출액 A (백만원)			
해당 품목 매출액 B (백만원)			
매출비율 B/A (%)			
기업 전체 수출액 C (천불)			
해당 품목 수출액 D (천불)			
수출액 비율 D/C (%)			
자료 출처:			

7-2. R&D 투자

	Y-2년	Y-1년	Y년(전년도)	금년(전망)
R&D투자액(백만원)				
투자비율(%)				

* 투자비율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매출액

7-3. 재무성과

부채총액(백만원)	자기자본(백만원)	부채비율(%)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영업이익률(%)

*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자기자본×100,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매출액×100

7. 기업 성과

7-4. 기업의 특허관련 활동 (국내외 합계)

특허 (2014년 기준)	출원	건
	등록	건
	합계	건
특허관련 활동 자유 기술 (차별성, 특화된 기술 등)		

* 등록이 완료된 건은 출원건수에서 제외

7-5. 유관기관사업 선정

①	수출유망중소기업	☐
②	글로벌강소기업	☐
③	월드클래스 300	☐
④	혁신형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
⑤	녹색인증기업	☐
⑥	사회적기업	☐
⑦	서비스품질인증	☐
⑧	KOTRA 글로벌브랜드	☐
⑨	기타(_____)	☐

7-6. 해외 마케팅 활동 (전년도 기준)

해외마케팅 지출액	천불
	*인력 등 운영비 제외 순수해외 마케팅 사업비
수출액 대비 해외마케팅 지출액 비율	%
	*해외마케팅지출액/전체 수출액 x 100
수출전담인력	명
마케팅 활동 자유 기술 (종류, 지역 등)	

7-7. 기타 기업 성장성 및 경쟁력 관련 자유기술

8. 품목 현황	

<세계시장 현황>

8-1. 해당 품목의 주요 국가별 생산 및 시장 점유율 (전년도 기준)

※ 기존선정품목에 기업만 추가 신청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 )위	(세계전체)
국가명							
생산액(백만불)							
비중(%)							(100)
생산량(_____)							
비중(%)							(100)

* 한국이 순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공란에 순위 기입 후 작성

* 생산은 해외 현지공장 생산도 포함되며, 생산량은 단위를 반드시 명시후 기재 (이하 같음)

자료 출처: _____

8-2. 해당 품목의 주요 기업별 생산 및 시장 점유율 (전년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 )위	(세계전체)
기업명							
소속국가							
생산액(백만불)							
비중(%)							(100)
생산량(_____)							
비중(%)							(100)

* 기업의 국가명은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명을 기입

* 자사가 순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공란에 순위 기입 후 작성

자료 출처: _____

<국내시장 현황>

8-3. 해당 품목의 국내 주요 기업별 국내 생산 및 국내시장점유율 (전년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 )위	(국내전체)
기업명							
생산액(백만불)							
비중(%)							(100)
생산량(_____)							
비중(%)							(100)

* 자사가 순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공란에 순위 기입 후 작성

자료 출처: _____

8-4. 해당 품목의 국내 주요 기업별 수출실적 (전년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 )위	(국내전체)
기업명							
수출액(천불)							
비중(%)							(100)

* 자사가 순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공란에 순위 기입 후 작성

*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직접수출, ②대행수출, ③간접수출, ④대북수출 등을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은 미포함)함.

* 단, 서비스업 품목의 경우 상기 수출액 이외 ①해외판매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②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함.

자료 출처: _____

9. 기업의 품목현황	

9-1. 해당품목의 자사 및 국가 수출 실적 (최근 3년간)
* 7-1. 기업과 해당품목 매출 및 수출실적 (최근 3년간) 참고

비 고	Y-2년	Y-1년	Y년(전년도)
해당품목 수출액(천불)	* 7-1. 기업과 해당품목 매출 및 수출실적 (최근 3년간) 참고		
해당품목 국가수출액(천불)			

9-2. 기업의 해당품목 주력시장 및 목표시장 형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주력시장 (국가명)			
주요활동 기술			

9-3. 기업의 해당품목 관련 특허 현황(전 기간)

국내 특허	출원	건	합계 건
	등록	건	
해외 특허	출원	건	합계 건
	등록	건	
특허관련 활동 자율 기술 (차별성, 특화된 기술 등)			

* 등록이 완료된 건은 출원건수에서 제외

9-4. 기업의 해당품목 관련 인증 및 수상 현황

	인증/수상	국내/해외	인증/수상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1					
2					
3					

9-5. 품목의 경쟁력, 시장성 및 성장성 자유기술

10. 담당자 정보	구분	성명	직책	전화	팩스	e-mail
	대표자					
	인증담당자					
	홍보담당자					
	해외마케팅 담당자					

* 개인정보 작성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 필요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끝.

[별지 제2호 서식]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서 변경신청서

<table>
<tr><td>①신청현황</td><td>(인증서 번호) 제 - 호 (기업 선정년도) 년

※ 해당사항에 체크
□분실 □훼손 □상호 변경 □품목명 변경
□현재세계일류상품 □차세대세계일류상품</td></tr>
<tr><td>②업체현황</td><td>(상 호) (한글) (영문)
(주 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구 분) □대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업종)
(연락처)
<table>
<tr><th>구 분</th><th>성명</th><th>직책</th><th>전화</th><th>팩스</th><th>e-mail</th></tr>
<tr><td>대표자</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담당자</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③품목현황</td><td>(품목명) (한글) (영문)
(HS코드 10단위)
(품목설명) * 쉽게 개략적으로 기술</td></tr>
<tr><td>④변경내용</td><td>(변경사항)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td><td></td></tr>
</table>
(변경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td></tr>
<tr><td colspan="2">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변경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2">※ 구비서류
1. 기존 인증서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4. 생산규모, 수출규모 자료(기업 양수도에 의한 상호 변경에 한함)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td></tr>
</table>

[별지 제3호 서식] 세계일류상품 로고서식 및 사용매뉴얼

가. 선정 로고

현재세계일류상품	차세대세계일류상품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나. 색상 규정

【현재일류상품】

전용색상은 인증마크와 더불어 세계일류상품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각종 시각 매체에 적용되어 세계일류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용색상의 표현은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 명시된 Pantone Color와 RGB Color를 표준으로 합니다. 4원색 프로세스로 재현해야 하는 신문, 잡지 등의 경우에는 별색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4원색 프로세스 규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Gradation Version (기본형)

Flat Version (단순형)

Main Color

Sub Color

【차세대일류상품】

전용색상은 인증마크와 더불어 세계일류상품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각종 시각 매체에 적용되어 세계일류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용색상의 표현은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 명시된 Pantone Color와 RGB Color를 표준으로 합니다. 4원색 프로세스로 재현해야 하는 신문, 잡지 등의 경우에는 별색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4원색 프로세스 규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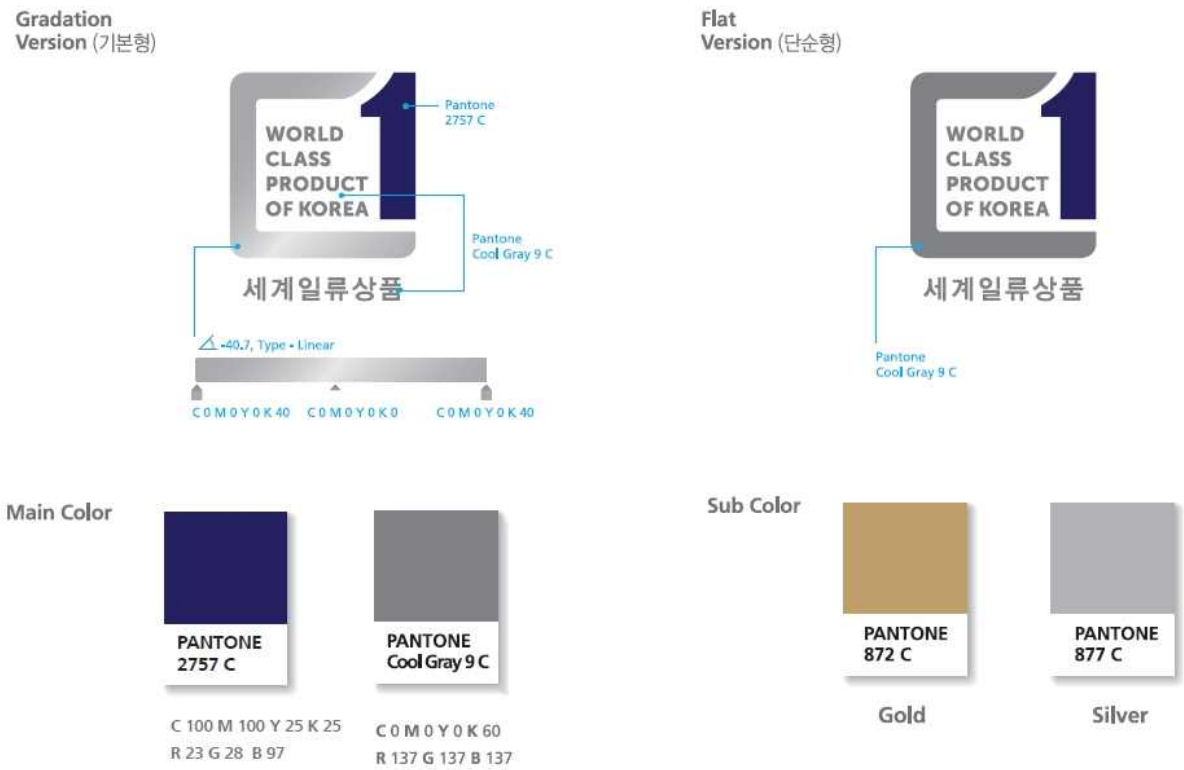

다. 색상 활용

- ○ 인증마크는 적용 환경에 따라 포지티브(Positieve), 네거티브(Negative)로 표현할 수 있음
- ○ 기본형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나, 인증마크의 그라데이션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단순형(Flat Version)을 활용하며, 복잡한 배경, 또는 배경색이 어두울 경우 인증마크를 네거티브(Negative)로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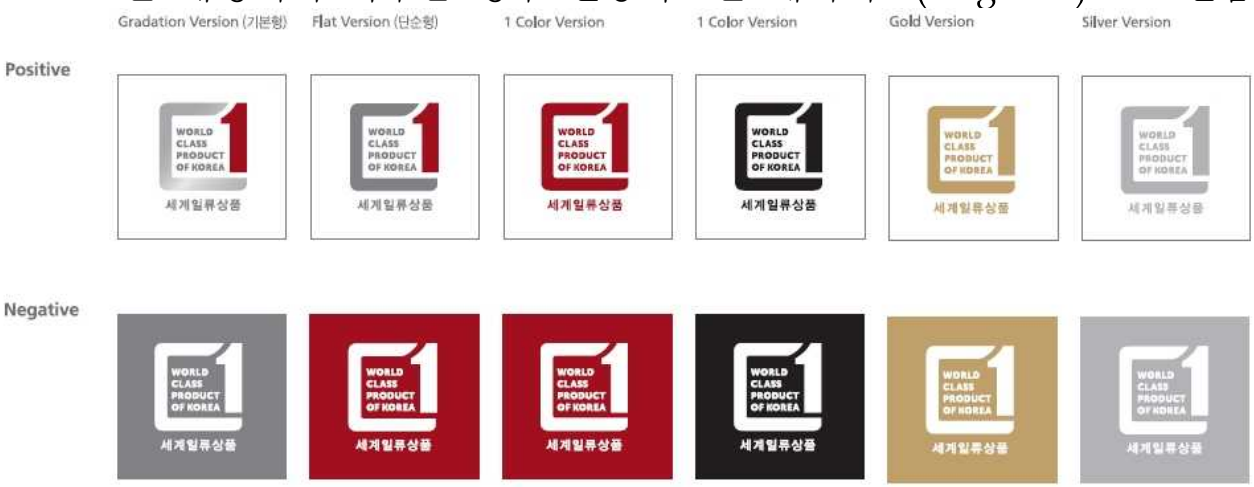

라. 엠블렘 응용

【스티커 적용시】

- ㅇ 적용 제작물 : 건축자재류, 플라스틱 용기류, 면류, 종이류 등 제품
- ㅇ 스티커로 제작된 인증마크는 부착하기 편리한 모든 제품에 사용 가능하며, 탈부착을 원활히 하고자 할 때 사용

Sticker

*제작방법
-스티커 전용지에 별색인쇄
-인쇄면에 에폭시로 가공

【에폭시 적용시】

- ㅇ 적용 제작물 : 전자제품류, 가전제품류 등 고급 제품
- ㅇ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심미성을 높이는 데 사용
- ㅇ 포장에 부착하지 않고 직접 제품에 부착할 시 사용

Silver

Gold

*제작방법
- 유광은지 또는 금지의 원단에 네가티브로 인쇄를 한 후 형압
- 인쇄면에 에폭시로 가공
- 인쇄 뒷면에 접착제를 발라 스티커 활용

【사출 적용시】

- ㅇ 적용 제작물 : 합성수지류, 고무제품류, 스테인레스 제품류 등 고부가가치 제품
- ㅇ 제품에 영구적으로 부착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에 부착하는 제작방식으로 은색의 색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 제품의 색상에 따라 인증마크 색상을 적용시킬 수 있음

Silver

Full Color

【형압 적용시】

○ 적용 제작물 : 종이 포장류 제품

○ 고급 포장류의 표면에 제작하는 방식으로 제품포장에 심미성을 가미하고자 할 때 적용

○ 패키지에 직접 형압하여 엠보싱이나 디보싱으로 제작

Emboss

Deboss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수출지원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직·간접수출지원 사업 안내, 사후F/U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이메일 주소, 사무실 번호,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지원제도 안내, 추진, 성과관리, 사후F/U, 차기 사업 안내 등을 위해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귀하의 정정, 삭제 요구가 있을 때까지 보유합니다.

○ 제공해 주신 개인 정보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사로 선정된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수집 항목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성명 1 (인)
성명 2 (인)
성명 3 (인)
성명 4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붙임3]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리스트 (2001년~2014년)

* 별도 송부

공 백